

(붙임 1)

입찰공고문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한국의 주택금융사』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
-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연구용역 6개월+편집·인쇄 2개월)
- 라. 사업예산 : 151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 마. 사업시행 부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가.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주택 및 부동산금융 관련 연구용역(유사용역)을 수행한 경험(실적)이 있는 기관*

* 연구기관, 교육기관, 학회 등 학술단체 포함

- 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입찰자격 충족자

- 제4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58조(제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한 유자격자
-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4조의 2(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조회 가능(공사소개 내 공사내규)

-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나. 공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자는 공사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제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제82조(입찰보증금) 제3항 해당자(별첨자료 참조)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마감일시 : [2015년 8월 17일 오후 5시]

나. 제출장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주택금융연구소(608-828)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공사 지방이전으로 인하여 방문접수와 등기우편 접수를 모두 허용하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라. 제출서류

-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③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할 것)
- ⑥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시 지급각서)
- ⑦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⑧ 제안서 10부
- ⑨ 가격제안서 1부(밀봉)
- ⑩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대조필)

6.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 (80점)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 나. 기술능력평가점수,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인 협상에 의해 낙찰자를 정함
-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협상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7. 협 상 일 시 : 추후 별도 통지

8. 기 타 사 항

- 가. 입찰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 나. 입찰설명회 : 없음(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다. 관계서류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바.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후 제출
- 사.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아. 기타사항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051-663-8152)

2015. 7. 7.

[별첨] 한국주택금융공사 계약규정 발췌

□ 경쟁입찰 참여 자격

제5조의2(우선조달계약)

① - 생략 -

②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은 제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조 제2항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4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일 것
-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①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 기준은 제59조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추정가격이 다음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 경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제1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5.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6.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7.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등에게 사망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8.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99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133조 및 제134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9.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개정 2014.11.05.)
 11.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1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13.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제95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4.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15.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16. 정당한 이유없이 제9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7. 제99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8.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9.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개정 2014.11.05.)
 20.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개정 2013.12.31)
 21.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공사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⑥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⑦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⑧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으면 사장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⑨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⑩ 제8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을 준용한다.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

제82조(입찰보증금)

① ~ ② - 생략 -

- ③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